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1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인영·윤건영·김용만

정준호 • 이수진 • 임광현

김성회 · 이정문 · 박상혁

김윤덕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 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 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 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 터 제11조까지).
-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안전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명안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별표에 따른 생명안전 업무
 - 나.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라.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각 호 및 제65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란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

- 3.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생명안전업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가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하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실태조사 등 생명안전업무에 관한 연구
 - 2. 직업지도
 - 3.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 4. 생명안전업무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제2장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책임

- 제5조(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직접고용 등 책임) ①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1.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로서 해당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의 경우
 - ③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2.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사유
-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4.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5.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6.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사항
- 7.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그 밖에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
- 8.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직접고용 의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제5조를 위반하여 생명 안전업무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한 때부터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해당 생명안전업무 종사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신고의무)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는 생명 안전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합병·양도·폐지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 제8조(지도·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에 대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제5조를 위반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에 대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 안전업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사업장 및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기타 공공 단체 등에 대하여 생명안전업무의 고용현황 등 이 법 시행에 필요

-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 제1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과태료) ① 제9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 근로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계약 및 도급계약은 이 법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생명안전업무(제2조제1호가목 관련)

-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다음 업무
 - 가. 철도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 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 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 보수 업무
- 2. 항공운수사업의 다음 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 · 통신시설의 유지 · 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 · 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 · 긴급물품의 탑재 · 하역 업무
- 하.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 3. 수도사업의 다음 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 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 · 제어 설비의 운영 업무
 -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 4. 전기사업의 다음 업무

- 가. 발전부문의 다음 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 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나. 송전 변전 및 배전 부문의 다음 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 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 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 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다. 전력거래 부문의 다음 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하다) 업무

-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다음 업무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다음 업무
 -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7. 병원사업의 다음 업무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 무
 -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 발전 및 냉난방 업무
- 8. 혈액공급사업의 다음 업무
 -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다.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 9. 통신사업의 다음 업무
 -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 · 관리업무

-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